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652호)

2026. 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현 중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중방역수의사 의무복무기간 단축 및 적정수준 보수 제공 ...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6. 30.
3.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충역에 편입되어 공중방역 수의사로 복무할 경우 3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공중방역수의사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보니 공중방역수의사 지원을 기피하여, 공중방역 최일선에 배치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정원을 못 채워 방역인력이 부족하며, 가축 전염병이 늘고 있는 추세에 비해 가축방역은 취약해 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보수를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여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공중방역수의사 지원의 유인을 강화하여 가축방역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공중방역수의사 의무복무기간 단축 및 적정수준 보수 제공

개정안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군사교육소집기간 제외)에서 2년(군사교육소집기간 포함)으로 단축하고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전염병 방역 최일선에 배치되어 국가 가축방역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으로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025~2026년 동절기 들어 가금농장 62건, 야생조류 63건이 발생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2026년 들어 석 달여 만에 24건이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규모와 방역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중방역수의사 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공중방역수의사 신규 편입 인원은 2022년 149명에서 2023년 127명, 2024년 103명, 2025년 102명으로 매년 감소해 왔고, 2026년에는 2명에 그쳐 사실상 제도 붕괴 수준의 지원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공중방역수의사 지원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현역병 대비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 가축방역 영역 강제복무로 인

한 수의사 커리어 단절, 불안정한 처우, 희망하지 않는 교외 지역 근무·주거,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급여 등이 복합적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여 현역병과의 복무기간 격차를 줄이고, 보수지급 기준을 정비하여 지원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가축방역 인력 공백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은 유사한 다른 보충역 제도의 복무기간과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병역법」은 보충역을 복무 형태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8종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 공중방역수의사와 자격 요건 및 신분(임기제 공무원)이 유사한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 의사, 공익법무관의 현행 복무기간은 3년(군사교육소집기간 제외)으로, 공중방역수의사와 동일함.

【 「병역법」에 따른 보충역별 복무기간 】

구분	복무기간	관련 법령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병역법」
예술·체육요원	-	「병역법」
공중보건 의사	36개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36개월	「병역법」
공익법무관	36개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중방역수의사	36개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전문연구요원	36개월	「병역법」
산업기능요원	34개월(현역병입영대상자) 23개월(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병역법」

이처럼 유사한 보충역 제도의 현행 복무기간이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중방역수의사만 개별적으로 2년으로 단축될 경우, 자격요건·신분이 유사한 다른 보충역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복무기간 조정은 유사 제도 전반과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둘째, 복무기간 단축이 지원 기피 현상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사전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공중방역수의사 지원 기피의 원인은 복무기간뿐만 아니라 가족방역 영역에 한정된 복무로 인한 의사로서의 커리어 단절, 희망하지 않는 교외지역 근무·주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개정안대로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더라도 현역병 복무기간(1년 6개월)과는 여전히 격차가 남는 상태에서 복무기간 외의 다른 요인들이 함께 해소되지 않는 한 지원 기피 현상이 실질적으로 완화될지는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복무기간 단축이 실제 지원을 회복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지원 기피의 여러 원인 중 복무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사전적인 실태조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셋째, 법률에 일정 상한을 정하지 않고 보수 지급기준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보수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군인보수의 한도에서”라는 법률상 상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보수 수준을 상한 없이 대통령령으로 전적으로 위임하겠다는 것으로 법률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보수 수준 결정 권한을 사실상 행정부에 폭넓게 맡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또한 복무기간과 마찬가지로 보수 지급기준 역시 자격요건·신분이 유사한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이 현재 동일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사 제도와 함께 보수

기준의 개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수준의 보수가 현행 군인보수 한도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책정될 경우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법률 개정애 앞서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보수 기준의 상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4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5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1호)이 해당 개정안과 함께 발의되어 각 소관 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이므로, 개정안과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개정안에 대하여 병무청은 의무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소요 증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복무기간 단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보수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의장교와 자격요건·선발방식이 유사하고 동일한 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군인보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

는 현행 제도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힘.

한편 대한수의사회 및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는 복무기간 단축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복무기간 단축에는 동의하나 수의장교와의 보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보수지급 기준은 군인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마지막으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¹⁾

1)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

현행	개정안
제9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중방역 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 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u>군 사교육소집기간</u> 외에 3년으로 한다.	제9조(의무복무기간) ① ----- ----- ----- <u>군</u> <u>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u> <u>년으로</u>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수 등) ① 공중방역수의 사에 대하여는 <u>군인보수의 한</u> <u>도에서</u> 보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제16조(보수 등) ① ----- ----- <u>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수준의</u> - -----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문의처

02)6788-5425

참고1

공중방역수의사 관련 설문조사 결과

□ 2019년 공중방역수의사 업무 만족도 영향 요인

(김우찬 등, 「2019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실태조사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24)

순위	응답	응답 인원 및 응답률
①	<u>근무 환경</u> (공간, 인력, 장비, 사무환경 등)	110명 (58.5%)
②	<u>근무 위치</u> (도시와의 접근성)	97명 (51.6%)
③	<u>근무기관 내 인간관계</u>	96명 (51.1%)
④	<u>급여 수준</u>	86명 (45.7%)
⑤	<u>후생복지</u> (관사제공, 휴가 등)	74명 (39.4%)
⑥	<u>업무 성취감</u>	41명 (21.8%)

□ 2023년 공중방역수의사 미달 사태에 관한 설문조사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및 베트윈(수의사 커뮤니티 사이트) 실시]

설문: 2023년 공중방역수의사 미달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복 선택 가능) [응답자: 92명(현역 공중방역수의사 88명, 복무만료자 4명)]		
①	현역병에 비해 <u>과도하게 긴 약 37개월의 복무기간</u>	82명 (89.1%)
②	<u>가축방역 영역에 강제 복무함으로써 수반되는 수의사로서의 커리어 단절</u>	43명 (46.7%)
③	아직까지 불안정한 <u>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및 신분적 한계</u>	35명 (38.0%)
④	<u>희망하지 않는 교외지역</u> 에서의 복무 및 주거	33명 (35.9%)
⑤	여성, 군필 신입생의 증가로 인한 <u>미필 남성 수의대생의 감소</u>	19명 (20.7%)
⑥	상대적으로 <u>불충분한 약 330만원의 급여</u>	14명 (15.2%)
⑦	기타	4명 (4.3%)